

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의안
번호 2018~

제출일자 : 2018. 07. .

제 출 자 : 거창군수

1. 요구이유
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 민간위탁

나. 사 업 량 : 휠체어택시 차량 2대,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

다. 위탁대상 사무

- 휠체어택시 위탁운영(2대)
-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
- 거동 불편자 이용예약 등 관리

라. 그간 운영상황

- 수탁기관 :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
- 위탁기간 : 2017. 5. 16. ~
- 위탁차량

차 종	규 격	차량번호	승차인원	연 식	비 고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4우8590	7명	2011년	* 휠체어리프트 장착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9서1654	7명	2007년	

마. 운영계획

-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
 -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행
 - 위탁기간 : 3년
 - 위탁내용 : 휠체어택시(2대) 운영, 차량과 운행서비스 사무업무·관리 등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사유

-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여 휠체어택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, 차량의 운행과 관리 등의 업무도 증가하는 추세임
- 담당부서의 업무과중과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함

나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」 제4조

다. 향후일정

- 수탁기관 공고 : 2018. 7월 ~ 8월중
- 위탁 운영기간 : 3년

라. 소요예산

- 위탁운영비 : 연간 54,000천원

마. 위탁운영 계획안 : 붙임 참조

거창군휠체어택시 민간위탁 운영계획
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

1. 추진근거
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4조

2. 사업현황

- 위탁차량

차종	규격	차량번호	승차인원	연식	비고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4우8590	7명	2011년	* 휠체어 리프트 장착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9서1654	7명	2007년	

- 위탁사업비 : 54,000천원 / 2018년

3. 그간의 추진사항

- 수탁기관 :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
- 위탁기간 : 2017.5.16. ~ / 당초 2017.5.16.~2018.6.30.까지 위탁계약 함
- 위탁차량 : 2대

4. 위탁조건
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
- 위·수탁 협약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 준수

5. 수탁자격 : 관내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

6. 추진 계획

가. 수탁기관 공개모집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: 2018.7월 ~ 8월중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: 2018. 8월중
-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8. 8월중

나. 수탁기관 선정 기준

- 수탁기관의 적정성
- 차량운행의 전문성과 책임성
- 휠체어택시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

다. 위탁범위

-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·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
- 휠체어택시 유지·관리
- 휠체어택시 이용 홍보
- 기타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

7. 소요예산 : 2018년 위탁사업비 54,000천원

8. 기대효과

- 장애인·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사회활동 활성화
- 다양한 복지사업 제공과 일자리 창출
-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

관 계 법 령(요약)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(행정과)

(제정) 1999.07.15 조례 제1515호
(일부개정) 2013.06.12 조례 제2138호
(일부개정) 2014.05.28 조례 제2192호

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

(복지정책과)

(제정) 2002.05.09 조례 제1641호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
- 제4조 (운영)**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 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운영을 위탁·관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